

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-4 / 전송부설시행 8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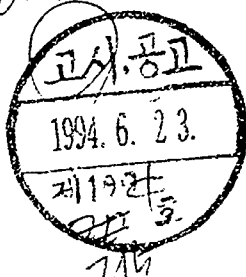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개 58533 - 1445

시행일자 1994. 6. 23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	시	장
보존			영등포구	
주택국장	전결			
주택개발과장		협조통제관		
개발 1 개장		법무담당관		결재
기안	이 수 범	(고시안심사)		1994. 6. 23 주택국장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(신길1지구)

1. 건설부고시 제1992-846호(93.1.1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4-105호(94.4.6)로 개선계획수립된 우리시 영등포구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신속건물존치를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제척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변경지정하고

2. 지구면적 및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지구내 지역경계 변경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

3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.

첨부 1) 고시안 1부.

2)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입안조서 1부.

3) 주거환경개선계획(변경)서 1부. 끝.

원본대조

(제 2 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계재의뢰

1. 다음 사항에 대한 관보계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계재구분 : 고시

나. 계재건명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
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

첨부 고시문 2부. 끝.

(제 3 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주택개발과장

제목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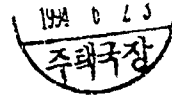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1992-846호(93.1.1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4-105호
(94.4.6)로 개선계획수립된 우리시 영등포구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
신축건물준치를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제적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
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변경지정하고

2. 지구변적 및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지구내 지역경계 변경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
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
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

3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
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첨부 1) 고시문 1부.

2)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. 끝.



원본대조필

(제 4 안)

수신 영등포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통보

1. 주택 58533-1065('94.5.23)호 및 주택 58533-1176('94.6.7)호와 관련임.

2. 건설부고시 제1992-846호(93.1.1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4-105호
(94.4.6)로 개선계획수립된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지구변경지정
및 개선계획변경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

3. 동 내용을 일반인에게 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것

첨부 1) 고시문 1부.

2)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제목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통보

1. 건설부고시 제1992-846호(93.1.1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4-105호(94.4.6)로 개선계획수립된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) 고시문 1부.

2)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. 끝.

주택개량과장

1994 8 10
주택국장 월본대주필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15 호

실시 1994. 6. 27. 15 조		
담당자	관계과	서울특별시
기니	115	15
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

1. 건설부고시 제1992-846호(93.1.1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4-105호(94.4.6)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(신길1동1)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 제6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영등포구 주택과,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4년 6월 27일

원본대조

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당초	변경후	증감	
신길1지구 (신길1동1)	영등포구 신길동 202번지 일대	11,033	11,024	감 9	제척 9㎡

※ 변경사유 : 신축건물존치를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제척

나.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

1)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지구내역

지 구 명		위 치	면 적(㎡)			시행방법
			당 초	변 경	증 감	
신길1지구 (신길1동1)	제1지역	영등포구 신길동 202-30번지 일월	7,751	7,723	감 28	공동주택 건설사업
	제2지역	영등포구 신길동 202-13번지 일월	3,282	3,301	증 19	현지개량 사업

※ 변경사유 : 신축건물준치를 위한 현지개량지구내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지역경계 변경

2) 사업시행기간 : 1994.4.6 ^{1994.4.6} 1998.4.5 ^{1998.4.5}

3) 사업시행자 { 공동주택 :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
 현지개량 : 영등포구청장, 단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
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별표2의 제3호사업
 (건축물의 개량)은 주민

※ 기타 개선계획 변경내용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^{영등포구} 주택개량과와 영등포구 주택과,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.

원본대조필

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입안조서

1. 지구 현황

- o 지구 명 : 신길1(신길1동1) 주거환경개선지구
- o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202번지 일대
- o 면 적 : 11,024㎡(국공유지 889㎡, 사유지 10,135㎡)
- o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

2. 추진 경위


- o '93. 1. 11. 지구지정 (건고사 제1992-846호)
- o '94. 4. 6. 개선계획수립 (서고사 1994-105호)

3. 변경 내용

- o 지구변경입안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당 초	변 경	증 감	
신길1지구 (신길1동1)	영등포구 신길동 202번지 일대	11,033	11,024	증감 주춤감	제척 9㎡

4. 변경 사유

원본대조 

- o 신축건물존치를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제척

첨부 : 위치도 1부.

신 길 1(신길1동1) 지 구
주거환경개선계획(변경)서



원본대조필

서울특별시

신길1(신길1동)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

I. 지구일반사항

- o. 지구 명 칭 : 신길1(신길1동)주거환경개선지구
- o.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202번지 일대
- o. 면 적 : 11,024㎡(국공유지 889㎡, 사유지 10,135㎡)
- o. 건 축 물 : 113동(무허가 12동, 유허가 101동)
- o. 세 대 수 : 303세대 (가옥주 98세대, 세입자 205세대)
- o. 시 행 기 간 : '94. 4. 6 ~ '98. 4. 5
- o. 시 행 방 법 :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현지개량사업
- o. 시 행 자 :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및 영등포구청장

II. 변경사유

- o 신축건물존치를 위한 현지개량지구내 도형(일부변경에 따른 지역경계
주력구장) 변경

III. 변경계획 내용

※ 이하 조서외에는 변경사항 없음.

원 본 대 조 필

3. 대상지구현황

미. 토지 및 소유현황

/// 토지현황

.토지소유자별

(단 위 : ㎡)

구 분	계	사 유 지	국공유지	비 고
당 초	11,033	10,144	889	
변 경	11,024	10,135	889	

· 용도별(지목별)

(단위 : m²)

구분	계	지 목 별				비 고
		대 지	도 로	임 야	기 타	
당 초	11,033	10,825	80	128		
변 경	11,024	10,816	80	128		

4. 토지이용계획

나. 토지이용의 세분화

/// 토지이용계획

(단위 : m²)

구분		계		제 1 지 역 (공동주택건설)		제 2 지 역 (현지개량사업)	
	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
계		11,033	11,024	7,751	7,723	3,282	3,301
택 지	소 계	10,172	10,163	7,751	7,723	2,421	2,440
	공동주택	7,751	7,723	7,751	7,723		
	단독주택등	2,421	2,440			2,421	2,440
도 로		861	861	861	861	861	861

10. 기 타

/// 분할시행계획

원본대조

(단위 : m²)

구분		계		제 1 지 역 (공동주택건설)		제 2 지 역 (현지개량사업)	
	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
위 치		영등포구신길동 202번지일대		영등포구신길동 202-30일대		영등포구신길동 202-13일대	
면 적	계	11,033	11,024	7,751	7,723	3,282	3,301
	사 유 지	10,144	10,135	7,184	7,156	2,960	2,979
	국공유지	889	889	567	567	322	322

도 치 위

도 신 로

방화지구
도신시청

영진국교

우진국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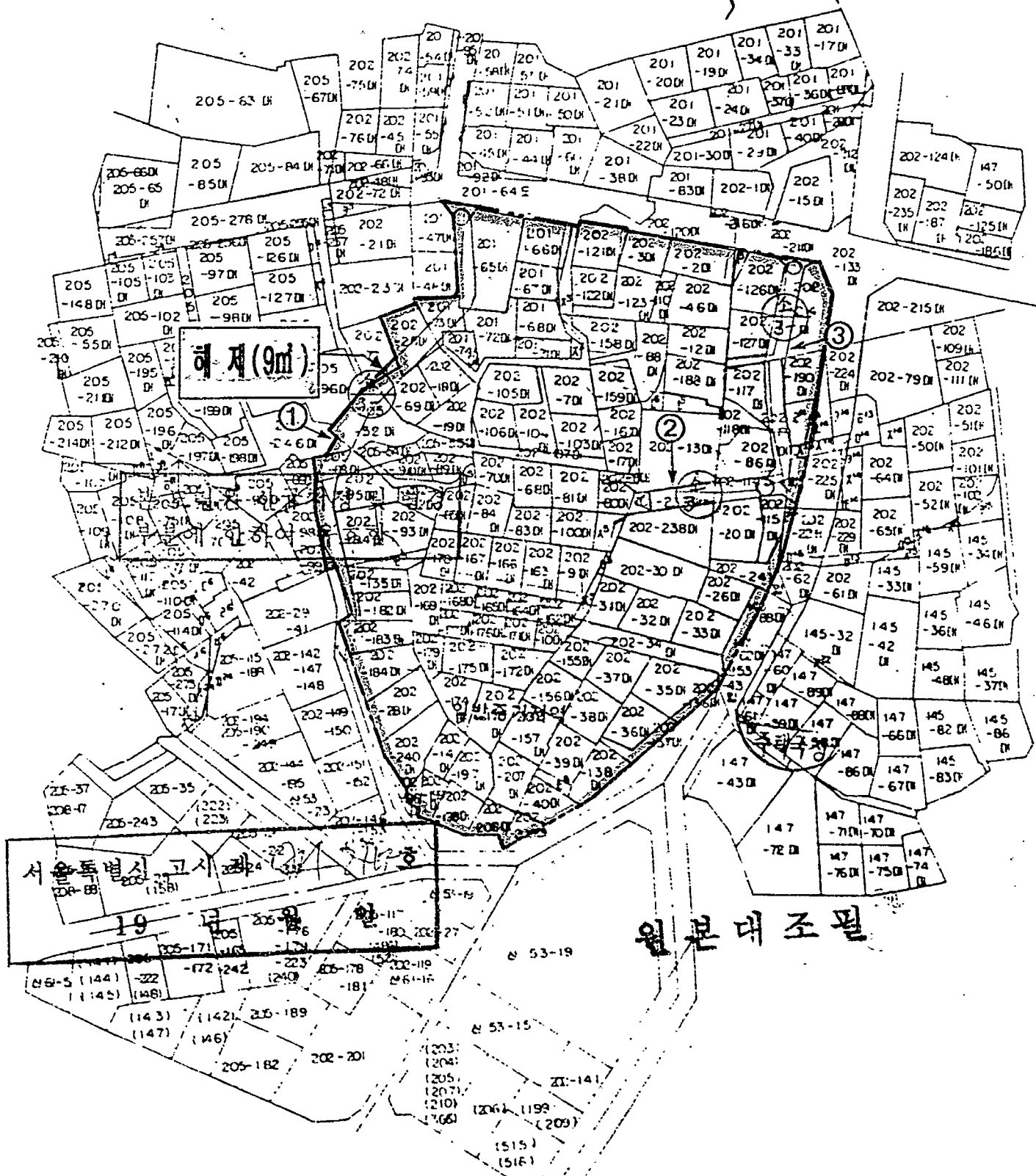
신길1지구

신길2지구

신길3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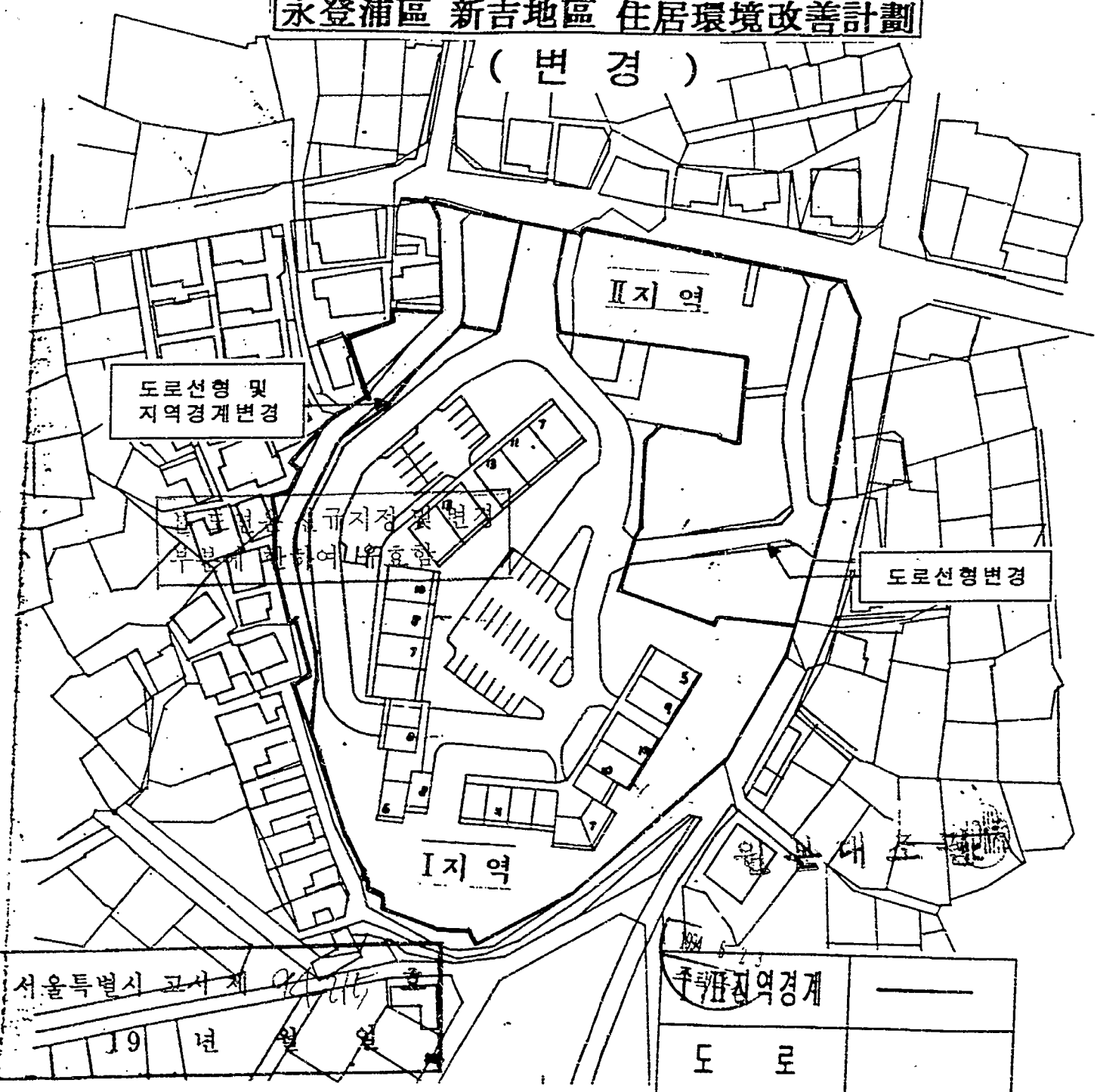
都市計劃圖

신길1 주거환경개선지구



永登浦區 新吉地區 住居環境改善計劃

(변경)



도로선형 및 지역경계변경

주거단지지역경계
부분에 대하여는 호합

도로선형변경

I 지역

II 지역

원본대조

서울특별시 공사 제 944호

19년 월 일

주거단지지역경계	— — — —
도 로	————

永登浦區 新吉地區 住居環境改善計劃

(당 초)



I, II 지역경계	—
도 로	—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27호
19 年 1월 1일